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397
------	------

2023. 12. 2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10월 16일, 김길영 의원(찬성자 14명)

나. 회부일자 : 2023년 10월 23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 제6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3.12.19.)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김길영 의원)

### 1. 제안이유

- 체력저하와 비만관련 지표가 증가하는 가운데, 서울시민의 체력 증진을 도모해야 할 당위성이 높아지고 있음. 체력을 적극적으로 증진하는 시민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적극적으로 체력 및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자 근거를 만들고자 함.

## 2. 주요내용

- 체력 증진을 위한 지원 내용을 신설(안 제16조제9호)
- 현재 제9호를 제10호로 함(안 제16조제10호)

##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주우철)

### 가.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안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의 권장·보호 및 육성을 위해 시민의 체력 증진 활성화를 위한 사업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음.

### 나. 생활체육 환경 현황

- 서울시는 스포츠 환경 변화 및 수요에 대응하는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으로 생활체육시설 추가 확충(680개소)과 생활체육프로그램을 현재보다 2배 이상 확대 운영을 정책목표로 한 “생활체육 도시 서울 만들기 종합계획” (2022.6.)을 수립한 바 있음.
- 공공 생활체육시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건강에 대한 위기감과 고립감 확산으로 스포츠 활동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비용부담이 큰 민간 시설보다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 서울시는 생활체육시설의 지속적인 확충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부족이 심각한 수준이며, 시민 1인당 공공체육시설 면적 1.55㎡로 광역시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이처럼 부족한 체육시설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직접 기획하는 생활체육프로그램 도입 ▶ 생애주기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 모두 함께 즐기는 스포츠 페스티벌 개최 등 3개의 정책사업 추진하여 시민 생활체육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나. 시민 체력증진 활성화 및 사업지원 시설(안 제16조제9호의 신설)**

- 개정안은 시장이 생활체육 진흥과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민의 체력증진 활성화 및 사업지원’ 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6조 >**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생활체육의 진흥) 시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의 권장·보호 및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 8. (생략) <u>&lt;신설&gt;</u> 9. (생략)	제16조(생활체육의 진흥) ----- ----- ----- ----- -. 1. ~ 8. (현행과 같음) <u>9. 시민의 체력 증진 활성화 및 사업 지원</u> 10. (현행 제9호와 같음)

- 현재 서울시는 “서울시 체력인증센터” 운영을 통해 시민의 체력증진 활성화 사업 지원이 이미 추진되고 있어 개정안은 이를 조례에 명문화함으로써 사업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려는 것이며, 이를 통해 서울시민의 생활체육 진흥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활성화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적위원 9명, 참석위원 명, 참석위원 전원찬성)

V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길영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397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10월 16일  
발 의 자: 김길영 의원(1명)  
찬 성 자: 김규남, 김동욱, 김용호,  
김춘곤, 김혜영, 서호연,  
송경택, 심미경, 이봉준,  
이상욱, 이종배, 최민규,  
한 신, 황철규 의원(14명)

### 1. 제안이유

- 체력저하와 비만관련 지표가 증가하는 가운데, 서울시민의 체력 증진을 도모해야 할 당위성이 높아지고 있음. 체력을 적극적으로 증진하는 시민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적극적으로 체력 및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자 근거를 만들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체력 증진을 위한 지원 내용을 신설(안 제16조제9호)
- 나. 현재 제9호를 제10호로 함(안 제16조제10호)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타 : 신 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시민의 체력 증진 활성화 및 사업 지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생활체육의 진흥) 시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의 권장·보호 및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한다.</p> <p>1. ~ 8. (생략)</p> <p>    &lt;신설&gt;</p> <p>9. (생략)</p>	<p>제16조(생활체육의 진흥) ----- ----- ----- -----.</p> <p>1. ~ 8. (현행과 같음)</p> <p>9. 시민의 체력 증진 활성화 및 사업 지원</p> <p>10. (현행 제9호와 같음)</p>

문서번호

2023101600000084

## 비대상사유서

요청인 : 김길영 의원

담당 : 오희선 과장  
이정수 팀장  
손제승 주무관

접수일 : 2023.10.16.

회신일 : 2023.10.20.

내용문의 : 02-2180-7954

###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비대상 사유서

#### 목 차

1. 판단 근거
2.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사 무 처  
재정분석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6조(생활체육의 진흥)제9호를 변경·신설함에 따라 관련비용이 발생하지만 소관부서 확인결과 기추진 사업이므로 서울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서울시는 현재 서울시 체력인증센터 운영을 통해 시민의 체력 증진 활성화 및 사업 지원을 기추진<sup>1)</sup> 중이므로 비용추계 대상 아님

[참조] 2023년 서울시 시민 체력증진 활성화 및 사업 관련 분야별 예산

(단위: 천원)

관련 조항	부서·정책·단위·세부	예산액
제16조(생활체육의 진흥)제9호	서울시 체력인증센터 운영	784,000,000

주 : 예산과목 :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시민생활체육 진흥, 생활체육활성화,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운영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

자료 : 2023년 서울시 제4차 간주처리 예산서

##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주    무    관      손제승  
☎ 02-2180-7954  
e-mail : smclt22@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시 첨부하지 않는 자료입니다.**

1)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운영 보조금 교부